

# 관광진흥법 위반 여행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관광진흥법』 제8조 제8항을 위반한 일반여행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35조(등록취소 등)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1항 별표2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로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처분사전통지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당사자께서는 2019.7.3.(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 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019년 6월 18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시정명령(1차)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폐업사실 미신고
3.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19. 6. 19.(수) ~ 7. 3.(수) (15일간)
4. 법적근거 : 「관광진흥법」 제3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5. 대상업체(당사자)

연번	처분대상	대표자	사업장소재지	처분의 원인 (위반조항)	예정된 처분내용
1	㈜골든타워여행사	김 ○ 영	증가로 17, 2층	폐업사실 미신고 1차  (관광진흥법 제3조제8항)	시정명령
2	㈜사라코리아	이 ○ 욱	연희로 82, A동 414호		
3	㈜정보투어	박○라, 차○규	연희로 227, 2층		
4	㈜하늘투어	진 ○ 종	응암로 32, 119호		
5	베리인터내셔널(주)	LIAO ○, ZHANG ○	홍연길 77, 202호		
6	스카이월드	조 ○ 일	통일로39길 22-31, 304호		
7	앨버트투어	왕 ○ 평	연희말로 32, 501호		
8	한국미경천하주식회사	XIAO ○, MEI ○	연희말로 32, 202호		

6. 공고문 게시장소 : 서대문구 및 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7. 기타사항

가. 당사자는 의견제출 기한(2019.7.3.(수))내에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을 간주하여 예정된 행정처분을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의견제출처 : 서대문구청 문화체육과(서대문구 연희로 248,5층 ☎02-330-1649)